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6. 11.

복지문화위원회

의안 번호	530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5. 30. 우종혁 의원 등 7인

나. 상정의결

-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2025. 6. 11.)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대표발의자 : 우종혁)

가. 제안이유

- 저출산 심화와 가족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는 사회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강남구에 거주하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함. 이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실질적인 육아 참여를 유도하고,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금액 (안 제3조)
- 장려금 신청 및 지급 방법 (안 제4조 및 제5조)

- 장려금 환수 규정 (안 제8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 예산조치: 논의 필요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미영)

I. 개요 및 입법 필요성

-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총 8개 조문과 2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입법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2024년 강남구의 합계출산율은 0.62명으로 서울시 평균인 0.58명보다 높긴 하지만 전국 평균인 0.75명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며, 날로 심각해지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은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회 문제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임.
- 지난해 5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2024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남녀 모두 소득 지원 증가와 자유로운 육아휴직, 재택근무 등 육아 시간 지원 증가 시 출산 의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 정책 중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책은 ‘직접 양육 시간지원’이었으며, ▶일·가정양립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조치로 ‘제도사용으로 인한 급여삭감 최소화(25.1%)’, ‘업무대행자에 대한 보상지원(21.9%)’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지원과 일·가정 양립이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출산율 제고 정책에 있어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 부담 경감 지원은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음.

- 그런데 아래 연도별 육아휴직 사용 통계를 보면,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증가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여성 육아휴직 비율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이는 남녀 임금 격차(2023년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65.3%) 및 육아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는 현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남성의 육아휴직은 남녀의 육아 부담의 균형, 자녀와의 유대감 형성,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및 사회복귀 지원 등 가정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또한 중요하다 할 수 있음.
- 이에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소득 감소를 일정 부분 지원하려는 본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인정된다고 사료 됨.

II. 주요 사항의 검토

가. 사회보장제도 협의 관련

-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함) 지급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한 것인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구청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그런데 현재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보건복지부의 「2025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르면, 사회보장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 자체는 협의 제외 대상이지만, 사업대상 및 지급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처분성 조례안에 담긴 사업은 협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물론 장려금 지급 사업과 관련한 타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사례에 비추어 본다면 강남구 사업도 협의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구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등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조례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음. 이에 본 조례안 제정은 관련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나. 장려금 지원 금액 명시 관련(안 제3조 관련)

- 안 제3조(대상 및 금액)에서는 장려금은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장려금 지원 금액을 확정적 금액인 “30만원”으로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첫째,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침해 소지 여부
 -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하면서도, 같은 항 제2항에서는 장려금 금액을 “매월 30만원”으로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침해 소지가 있어 보이나 지방의회의 의사와 지자체장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까지 형식적·기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아래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등을 참고하여 집행부 의사 확인이 필요해 보임.
- 둘째,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건부 협의로 사업이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이전에 확정 금액을 조례에 명시하는 부분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현 단계에서는 노원구, 동대문구의 사례와 같이 규정하는 방안의 논의가 필요해 보임.

다. 주요 조문 검토

- 안 제3조(대상 및 금액)에서는 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금액에 관하여 규정함.

-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장려금 지급 대상을 명시한 것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음. (제1호)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육아휴직자로서, (제2호) 대상 자녀가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제3호) 「고용보험법」 상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또한 지급 대상과 관련하여 안 제3조제1항제3호에서는 단서를 두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따른 특례 적용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특례 지원을 받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제4조(지원신청)제1항에서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장려금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 명시함으로써 지원 신청 기간을 「고용보험법」 상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과 통일하였음.
- 한편, 장려금 신청서 서식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에 미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집행부 의견은 아래와 같음.

[의원발의 조례안 통지에 대한 의견제출(보육지원과)]

[별지 서식]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지원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강남구 거주기간				

Ⅲ. 종합 의견

-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는 일자리, 교육 및 주거 비용, 육아 및 돌봄 부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지원이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는 없겠지만,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을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려는 것은 남녀 평등한 육아 참여 문화 조성 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접근으로 이해되는바 그런 점에서 본 조례안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 됨. 다만,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이행되지 않은 점과 이러한 상황에서 조례에 지원 금액을 확정적으로 규정한 부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530호

제안일자 : 2025.6.11.

제안자 : 복지문화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신청서를 추가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수정주요내용

- 조례상 중복되는 개념인 남성, 아빠를 삭제(안 제2조, 안 제3조)
- 장려 금액을 조례에 명시하는 대신 구청장에 위임(안 제3조)
- 조문 내용 수정 및 정비(안 제3조, 안 제4조)
- 별지 서식 추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남성 육아휴직자”를 “육아휴직자”로 한다.

안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빠 육아휴직자”를 “육아휴직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단, 동법 시행령 제95조의3”을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장려금 신청서”를 “별지 서식의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신청서”로 한다.

별지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 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u>남성 육아휴직자</u>를 말한다.</p> <p>제3조(대상 및 금액) ①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u>아빠 육아휴직자</u>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p> <p>1.·2. (생 략)</p> <p>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한 경우. 단, 동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p> <p>② 장려금은 매월 30만원으로 한다.</p> <p>③ 장려금의 지원 기간은 1년</p>	<p>제2조(정의) ----- -----.</p> <p>1. (원안과 같음)</p> <p>2. ----- ----- ----- <u>육아휴직자</u> ----- -----.</p> <p>제3조(대상 및 금액) ① ----- ----- <u>육아휴직자</u>----- -----.</p> <p>1.·2. (원안과 같음)</p> <p>3. ----- ----- -----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u>제95조의3</u>----- ----- -----.</p> <p>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p> <p><삭 제></p>

이하로 한다.

제4조(장려금 신청) ①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장려금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조(장려금 신청) ① -----

----- 별지 서식의 아빠 육아

휴직장려금 지원 신청서-----

-----.

② (원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대상 및 금액) ①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육아휴직자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한 경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장려금 신청) ①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

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장려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경우,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필요시 일 단위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장려금의 지급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타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신고) 수급자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장려금 지급중단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장려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제3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6조 따른 장려금 지급이 중단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4조제2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 (우종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30
----------	-----

발의연월일: 2025. 5. 30.

발 의 자: 우종혁·이도희·김현정·

오은누리·윤석민·이호귀·

이동호 의원(이상 7인)

1. 제안이유

저출산 심화와 가족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는 사회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강남구에 거주하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함. 이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실질적인 육아 참여를 유도하고,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금액 (안 제3조)
- 나. 장려금 신청 및 지급 방법 (안 제4조 및 제5조)
- 다. 장려금 환수 규정 (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대상 및 금액) ①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빠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육아휴직자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한 경우. 단, 동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적용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② 장려금은 매월 30만원으로 한다.

③ 장려금의 지원 기간은 1년 이하로 한다.

제4조(장려금 신청) ①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장려금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장려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경우,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필요시 일 단위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장려금의 지급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타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신고) 수급자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장려금 지급중단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장려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6조 따른 장려금 지급이 중단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4조제2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을 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적용한다.